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10. 9.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1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6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2000. 1. 29.) 상정, 심사, 보류
제7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2000. 10. 9.)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은 규

가. 제안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기능전환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1항)

-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마포구 000동 주민자치센터라고 함. (안 제4조제2항)
 -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교육·편의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자치센터는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필요시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자치센터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주민에 대하여 동장은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안 제15조)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주민의 문화·복지·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7조)
 -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함.
 - 동장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
 - 각계각층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관계 등 각 계각층의 인사를 균형있게 위촉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임기 만료전 위원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0조)

-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와 단체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된 경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도록 규정함. (안 제21조)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3조)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과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24조)

다.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1999. 8. 31. 법률 제6002호) 제8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 제8조
- 행정절차법 (1999. 2. 5. 법률 제5809호) 제41조제2항

3. 전문위원 겸임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및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자원과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므로써 2000년 6월이후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기반을 구축하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 시범동(도화1동, 합정동)의 운영 중단 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동 조례안은 본칙을 3장 24조로 구성하고 부칙을 3조로 구분하여 제1장 총칙은 일반적이고 총괄적인 공통적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음.

(주요 제정내용)

-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규정중 안 제6조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동사무소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주민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民間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치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중 안 제17조에서는 동사무소별로 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특히 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월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동장,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동 조례안은 2000년 6월이후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양강좌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시기에 시범 실시중인 도화1동과 합정동에 대한 운영중단등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동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않고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과 안 제23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 등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사료되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도 예상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구재정형편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10. 5. 신봉현 위원회 1인

나.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중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수정하여 위원의 범위에 상임교문을 포함하고 상임교문은 구청장이 위촉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정골자

- 위원의 범위에 상임교문을 포함. (안 제17조제1항)
- 구의회의원을 상임교문으로 구청장이 위촉함. (안 제17조제2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안 제17조제6항)
- 회의 개최권을 위원장으로 일원화. (안 제21조제1항)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7조제1항중 “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을 “ 위원은 상임고문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으로 한다.
- 안 제17조중 “ 제2항내지 제4항” 을 “ 제3항내지 제5항” 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임고문은 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안 제17조중 “ 제5항” 을 “ 제6항” 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안 제21조제1항중 “ 위원장 또는 동장” 을 “ 위원장” 으로, “ 재적위원” 을 “ 동장 또는 재적위원” 으로 한다.
- 부칙 안 제2조는 삭제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u>(신설)</u>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상임고문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 - - - - - - - ②상임고문은 구의회의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④ (생략) 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 ⑥ (원안 ② - ④과 같음)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1/3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①----- ----- ----- 위원장이 ----- ----- 동장 또는 재적위원 ----- -----.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삭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2000. 1.
제 출 자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기능전환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 (4)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나.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각동별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동 주민자치센터라고 함.(안 제4조제2항)

라.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교육·편의기능 및 주민자치기능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자치센터는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필요시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사. 자치센터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아.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주민에 대하여서 동장은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자.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차.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 (1)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함.
 - (2) 동장은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
 - (3) 각계각층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균형있게 위촉
 -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
 - (5)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파. 임기만료전 위원의 해촉사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와 단체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된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척토록 규정함(안 제21조)

- 가.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
- 나.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과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

3. 제정근거

- (1)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 제8조
- (2) 지방자치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 제8조
- (3) 행정절차법(1999. 2. 5 법률 제5809호) 제41조제2항

4. 예산조치:별도 조치 필요함

5. 기타: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생략함.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 동사무소(이하 “동사무소”라 한다)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 “단체”란 동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 단체, 취미·동호회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제2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와 제3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 지역사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마포구 〇〇〇동 주민자치센터 (이하 “자치센타”라 한다)라고 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의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구보에 고시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 조례의범위 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8월말까지 익년도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동사무소별로 서울특별시마포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와 단체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23조(실비보상등) ①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실비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화제1동과 합정동을 제외한 다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은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7호내지 제30호를 제8호내지 제31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